

고성군노인요양시설설치및운영조례(안)

의안	
번호	543

제출년월일 : 1999. 5. 28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1. 제정사유

-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하여 설치하는 고성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2. 주요골자

- 노인요양시설의 업무 및 기능 (안 제3조)
- 노인요양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 배치 (안 제4조)
-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 및 입소비용 (안 제5조)
- 65세이상 노인으로 생활보호대상자와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입소비용 감면 (안 제6조)
- 노인요양시설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근거법령 :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라목 및 동법 제15조, 동법 제35조제1항제7호,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제1호, 제35조제1항, 제45조제2항, 제46조 제5항 및 동법54조

4. 본문

- 붙임과 같음

고성군노인요양시설설치및운영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고성군노인요양시설(이하 "노인요양시설"이라 한다)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노인요양시설은 고성군 고성읍 대독리 3-1번지에 둔다.

제3조(업무 및 기능) 노인요양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

1. 노인성 질환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및 요양
2.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
3.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

제4조(관리자 배치) ①군수는 노인요양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의 정수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 및 입소비용) ①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.

- 1.생활보호대상 노인
- 2.생활보호대상 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.

②군수는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입소비용 및 입소보증금을 징수하며, 월별 비용수납 및 보증금의 정수는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지침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.

제6조(입소비용등의 감면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비용등을 감면할 수 있다.

1.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
2.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7조(위탁운영) ①군수는 이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